

새로만드는 위대한 울산

2026년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운영 지침

2026. 1.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경제정책관)

||| 목 차 |||

I. 사업 주요내용	1
II. 지원 요건(기업)	1
III. 신규채용 요건(일자리창출 대상자)	4
IV. 지원 내용	9
V. 지원 절차	10
VI. 기타	15

1

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 '26. 1. 1. 이후 정규직으로 1명 이상 신규채용(일자리창출 대상자) 및 채용 예정인 울산지역 중소기업 사업주
 -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물량팀,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사업내용)**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지원 항목	지원분야
복리후생시설 환경개선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탈의실 등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작업장 안전 환경개선	·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항목 중복 선택 가능

- **(지원금)** 일자리창출 대상자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1,000만원)
 - * 지원금은 기업체가 지출한 근로환경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 확인 후 지급
(기업 → 근로환경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보수 → 증빙자료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 요건(기업)

2-1 기업 기준

- 사업자등록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2-2 사업신청 및 일자리창출 대상자 신규 채용 기한 준수사항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6. 1. 1.부터 2026. 8. 31.까지 대상 근로자 채용을 완료해야 함

예시

- √ '26. 8. 10.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26. 8. 31.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 '26. 7. 10.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26. 9. 1.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지원 불가능

2-3 지원제외 기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참여 신청 시점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발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아래 2-3-4조항(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시에만 확인하며 동 기준 적용 제외

2-3-1

(소비·향락업 등 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희 주점업(56211), 무도유희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2-3-2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조건에 따라 검색 가능(예시: 전체_사업장명 / 지역_울산 / 업종_전체)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확인방법

- ①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 접속
- ②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정보공개"를 선택하여 하위 메뉴바가 생성되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클릭
- ③ 체불사업주의 성명이나 사업장명 등 조건에 따라 검색

2-3-3

(산업재해 발생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3-4**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는 예외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료로 인한 '고용·산재 체납 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에 따라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적용함

2-3-5**(중복지원)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 지원 기간 중 채용된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신규채용 대상자 (일자리창출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금(사업주가 지원받는 인건비성 지원금 또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유사 장려금 등) 대상자가 될 수 없음

2-3-6**(부정수급 등)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4.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단,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선발 이후 지원금 지원 대상기간 중에 고용보험 및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반환하여야 함

3 신규채용 요건(일자리창출 대상자)

3-1 일자리창출 대상자 신규채용 기준

3-1-1 (근로조건 등)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26. 1. 1.부터 '26. 8. 31.까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대상기업에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인정
-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⑤ (연령) 15세 이상인 자 * 2026년 기준 2011.12.31. 이전 출생자

3-2 채용 요건

3-2-1 일자리창출 대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26. 1. 1. 이후부터 ~ '26. 8. 31.까지 지원 대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26. 1. 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참여기업 신청 이전 일자리창출 대상자를 인턴 등의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 다만, 정규직 전환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및 '26. 1. 1. ~ '26. 8. 31. 이내에 이루어 질 경우만 인정

- * 정규직 전환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신규 근로계약서 사본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민취업지원 지원관련 안내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관련 안내

- ① 국취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은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국취 참여자가 일경험(인턴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일반적 의미의 취업과는 달리 봄 (기존) 국취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일반적인 의미인 '취업'으로 보았음

(변경)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취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 '취업'과는 달리 봄

 - * 국취 일경험(인턴형)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인 점, 일경험 참여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대상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
- ② 국취 일경험(인턴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국취 일경험(인턴형)을 제외한 첫 취업을 "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으로 판단

 - * 이는 "국취 참여 후 최초 요건"에 대한 해석을 변경 ('22. 3. 16. 이후 적용) 한 것으로 다른 기업 및 대상(결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함
- ③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일이 '25. 12. 31. 이전이어도,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사업 공고일 ~ '26. 8. 31.내에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함.

 - * 기간제 근로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간제 계약에 따른 최초 채용일이 '25년 이후여야 함. 단, 기간제 계약 기간에는 국민 일경험(인턴형) 참여한 기간은 제외함.
- ④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자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처럼 '채용 후 6개월 내 정규직 전환'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 후 6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되더라도 정규직 전환일이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공고일 ~ '26. 8. 31. 내에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⑤ 동일·관련 사업주에 의한 (재)고용 판단 시에도 국취 일경험(인턴형)참여 이력을 제외하고 판단

 - * 예시 : 국취 일경험(인턴형)으로 A기업에 '25. 2. 4. 참여하여 '25. 5. 1. 중도탈락한 甲이 '25. 7. 1. A기업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동일 사업주에 의한 재고용으로 보지 않음

3-2-2

대상 기업에서는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 사업 일자리창출 대상자 채용 후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대상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감원방지 대상) 일자리창출 대상자
- (감원방지 기간)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대상자 근속기간인 채용일부터 3개월

- (감원 방지 요건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제외) 일자리창출 대상자
근속기간 중 참여기업에서 일자리창출 대상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 사유 정정 등을 통하여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된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함

인위적 감원

인위적 감원이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대분류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에서
"중분류23(세분류①~⑥)" 및 "중분류26(세분류③)"에 해당하는 경우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③』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5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3-2-3

(근속기간)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근로하여 재직하여야 함

-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 대상자는 '26. 1. 1.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만 함

3-3

신규채용(일자리창출 대상자) 지원제외 대상자

- 새로 고용된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채용(일자리창출 대상자) 대상에서 제외됨

3-3-1

채용일 기준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 지원금 대상기간 중 혼인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 일자 전월 기준으로 지급 중단

3-3-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3-3-3

사업주가 대상자를 신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3-3-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 기업은 대상자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체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 휴학생은 지원 제외

3-3-5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간접고용

-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물량팀 등)
- √ 단, 파견 및 물량팀 근로자를 대상기업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3-6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 된 경우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상용 근로자)로 가입이 확인되는 자
- * 단순히 일용 근로내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원 배제되지 않음

3-3-7

동일 기업 또는 관련 사업주가 운영하던 기업에서 이직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동일 기업)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법인 대표가 동일한 경우
- (관련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을 준용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관련 사업주)

-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④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⑤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4 지원 내용

4-1 지원기간

- 사업 공고일 이후 사업장 내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보수 후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지원금 한도에 따라 지원금을 1회 단기로 지급하며, 지원금은 2026년 안에 신청·지급함
- 채용일은 2026. 1. 1. ~ 2026. 8. 31.까지여야 함
- 선정기업 중 신규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혹은 지원금 지원한도 감액되며, 예산범위 내 후보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참고

√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 사업은 예산의 범위 및 2026년 기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비 소진 시 종료로 지원제외 통보)

4-2 지원한도 및 지원범위

- (지원한도) 신규 채용인원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함

참고

√ 2026. 1. 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대상자 기준

- (지원범위)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지원 항목	지원 분야
복리후생시설 환경개선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탈의실 등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작업장 안전 환경개선	·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5 지원 절차

5-1 사업 신청

5-1-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 (참여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아래의 신청서류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 수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4-1)
- ②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 4-2)
- ③ 사업주 확인서 (서식 4-3)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 4-4)
- ⑤ 신규채용 협약서 (서식 4-5)
-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2024. 12. 31. 기준 / 2025. 12. 31. 기준 / 신청일 직전월 기준)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⑧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⑨ 임대차 계약서, 도면 등
- ⑩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5-1-2 적격심사 및 안내

- (적격심사) 수행기관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지침의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할 수 있음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선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서식4-6] 참여기업 선정 심사표 및 지침의 지원 요건에 따라 신청기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적격한 기업을 신청 우선 순서에 따라 선정 통보를 함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는 수행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부정수급 예방 및 처분사항 안내) 수행기관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외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별첨2]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 사항 확인서’ 를 제출받아야 함

5-1-3

지원협약 체결 (수행기관 - 기업)

- (협약체결) 수행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 협약」을 체결함
- (협약내용)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지원 협약」은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서식4-7]를 기초로,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작성하되,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수행기관은 기업이 이 지침 및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지원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거쳐야 함
- 기업도 수행기관이 이 지침 및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지원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거쳐야 함

5-1-4 > 지원금 대상자 채용

- (대상자 채용) 참여기업은 2026. 1. 1. ~ 2026. 8. 31.까지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채용해야 함

5-2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5-2-1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기한) 참여기업은 사업 선정 통보일부터 2026. 8. 31. 이내에 작업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단, 사업 공고일 이후 진행된 작업환경 개선에 소요된 지출비용에 대하여 지급 가능하며, 2026. 7. 1. 이후로 추가로 선정된 후보 기업은 2026. 11. 30.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방법) 참여기업은 이메일을 통해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5-2-2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금 대상자 해당 여부, ▲신규채용(최소3개월 이상 고용유지) 여부, ▲작업환경 개선 내역 등의 지급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익월 이내에 참여기업에 검토결과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신규채용자(일자리창출 대상자)의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기관에서는 울산광역시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에서는 수행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지원절차

단계	세부내용	추진주체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체 모집을 위한 사업 공고(홈페이지) 	울산상공회의소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 작성 및 첨부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기업체
대상자 자격심사 및 선발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적격 여부 검토 및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사업 참여에 선정된 기업체에 선정 결과 통보 	울산상공회의소
지원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승인 기업과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기업체, 울산상공회의소
작업환경개선 완료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내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보수 완료신고서 제출 	기업체
작업환경개선 완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내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보수 완료여부 현장 확인 	울산상공회의소
작업환경개선 완료 및 지원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내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보수 완료 및 지원금 신청서 제출 	기업체
지원금 심사 및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익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함 	울산상공회의소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은 사업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함 ■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함 	울산상공회의소

* 각 단계별 일정은 휴일 제외한 일정임

6 기타

6-1 사후 관리 및 지도

6-1-1 서류 관리 및 보존

- 수행기관은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신규 채용자(일자리창출 대상자)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6-1-2 대상자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완료 신고 후에 현장 점검을 실시함(서식 4-10)
-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울산광역시와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함

6-1-3 참여기업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참여기업이 「지방재정법」,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관계 법령,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